2018년 특성화고 현장훈련 지원사업 설명회

Contents

01. 추진 기관별 역할

02. 사업 추진체계

03. 지원 대상

04. 특성화고 현장훈련 사업 운영 안내

05. 주요질의답변 안내

01.추진 기관별 역할

추진 기관별 역할

고용부·교육부

- 기본계획 수립
- 업무협의

시·도교육청 (교육부)

- 기업정보제공(관계부처 협력)
- **참여 신청서 접수 및 승인**
- **선도(참여)기업 선정** (서면·현장심사)
- 선도(참여)기업 인정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 등록

산업인력공단

- **표준모델(평가 툴 포함) 개발·제공**
- **고요부 지원 선도기업 대상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 **고용부 지원 선도기업 모니터링 및 비용 지원**

참여 학교

- **사업 참여 신청**
- 참여기업 발굴, 교육생 매칭
- 교육생 사전교육 및 사후 관리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지원
- **훈련과정 컨설팅·모니터링**

참여 기업

- 기업맞춤형 교육훈련과정 설계 참여 · 훈련생 선발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 훈련과정 운영
-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급신청**

02.특성화고 현장훈련 지원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체계

① 현장교육훈련 표준모델 개발 및 학교 등에 제공 ('18.7월까지)

▪특성화고 학과 및 분야를 기준으로 개발 및 교육부(학교)에 제공

공단(일학습과정개발센터)

➡

② 기업맞춤형 과정설계 ('18.7 ~ 9월)

▪표준모델 기반하여 맞춤형 과정 설계(1~2개월) 및 평가툴 제공

학교-기업 참여

➡

③사업안내 및 참여신청(학교)·승인 ('18.7~9월)

▪사업안내 및 설명회 개최(공단)
▪학교는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참여 신청
▪선도기업 등 참여기업 선정 및 과정인정

참여학교(기업) → 시도교육청(교육부)

④ 실습생 매칭 ('18.8월~)

▪교육생 사전 교육
▪기업-학교-학생 매칭
▪현장실습표준협약(채용내용 포함)

학교-학생-기업

➡

⑤ 현장실습 운영 및 모니터링 ('18.9 ~ 11월)

▪실습과정 운영(3,000기업)
▪실습과정 모니터링 (학교, 위탁받은 외부전문가)
▪실습생 평가 및 실습종료

기업(훈련운영)/학교(모니터링)

➡

⑥ 수당 지급(본부 및 소속기관) ('18.10 ~ 12월)

▪기업현장교사 수당 신청접수・지급 (소속기관)
▪위탁기관 결과 확인 후 모니터링 비용 지급(공단 본부)

참여기업 → 지부·지사

03.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교육부 선정 선도기업이 특성화고·학생과 현장실습표준협약을 맺고 맞춤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지원 (1개월 또는 2개월 과정 운영)**

*** 표준모델 개발·지원,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 모니터링 비용 등 지원**

□ **(선도기업 대상 지원) 시·도교육청** 등에서 교육여건, 기업적절성, 안전관리 등 일정기준을 심사하여 **선정한 선도기업* 대상으로 지원**

* **선도기업**은 시·도교육청이 선정하는 정부·지자체 및 공기업과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참여기업 중 일정 기준(직무적합성, 교육여건, 안전·보건, 복리후생 및 시설환경 등)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 **수업일수 2/3출석이후 취업 가능**

□ **(현장실습 및 과정운영 기간) 현장실습은 9월~11월 실시하되, 1개월(4주)~2개월(8주) 과정으로 운영** * 현장실습 1개월 과정은 4주, 2개월 과정은 8주 기준, 야간 및 휴일 실습 금지

04.특성화고 현장훈련 사업 운영 안내

현장실습 실습생 정보 등록

○ 특성화고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 시 1회 **모니터링 지도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 실습생 정보 사전 등록

○ **선정된 참여학교는 10. 18(목)까지 특성화고 현장훈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습생 정보를 등록**

- **9~11월 사이 훈련진행이 어렵거나 그 이후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니터링 및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실습생 정보 등록은 현장실습 시스템 매뉴얼 11p 참고

04.특성화고 현장훈련 사업 운영 안내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급 안내

□ 기업체 준비 사항

○ **기업현장교사는**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실제훈련운영에 근거

『**주단위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후 **기업 훈련실시장소 소재지**

기준 공단 지부·지사에 기업현장교사 **수당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수당신청서, 기업현장교사 훈련일지, 재직(경력)증명서, 입금기업통장사본 등

※ 훈련일지 양식 및 공단 지부.지사 관할구역: 별첨참조

※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훈련종료 후 1주일 이내 현장실습 소재지 관할 공단 지부/사에 신청완료 할 것 ('18.12.14.(금) 신청 종료)

04.특성화고 현장훈련 사업 운영 안내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급 안내

□ 지부지사 수당 지급 절차

① 수당신청서류 제출 • 접수	② 수당서류 검토	③수당지급
▪제출서류: ① 기업현장교사 주단위 훈련일지 ex)4주일 경우 4매 ② 재직(경력)증명서 ③ 수당신청서 ④ 입금기업통장사본 ▪원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 및 교육부 포털(HiFive)에서 훈련내역 확인	▪ 신청기관 통장으로 수당 지급
참여기업 → 훈련실시장소 관할 지부 • 지사	**지부 • 지사**	**지부 • 지사 → 신청기관**

04.특성화고 현장훈련 사업 운영 안내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급 안내

○ 기업현장교사가 맞춤형 현장실습 과정에 따라 현장실습을 지도한 경우에 수당 지원

* **기업당 월 40만원의 수당 지급(최대 2개월 80만원)**

○ **(지급 기준) 1개월(4주) 과정으로 편성할 경우 40만원 수당 지급, 2개월(8주) 과정의 경우는 기업당 80만원을 훈련종료 후 지원**

- 한 기업이 **다수의 과정을 편성할 경우 훈련기간이 긴 1개 과정** 기준 수당 지급
- 4주 ~ 8주 사이 과정(5주, 6주 등)은 실습일수 기준 해당 주차 전체(5일) 진행 과정에 한해 1주당 10만원 추가 지급, 그 외는 4주 기준(4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신청 사례별 지원금 지급 예시 참조

04.특성화고 현장훈련 사업 운영 안내

예외 적용(다수 과정 편성 및 현장실습 중단될 경우)

○ 다수 과정 편성(1개 기업)
- 훈련기간이 긴 1개과정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 중단(기업 귀책사유)
- 현장실습 시간외 근무, 휴일・야간 실습 등 기업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훈련이 중단된 경우는 기업현장교사 수당 미지급

※ 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중단(현장 실습생의 자발적 중단)
- 훈련 중 실습생의 자발적 중단으로 **그 기업에 실습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훈련한 기간까지 **일할계산**하여 수당 지급

※ 기업체 모든 현장실습생이 퇴사한 경우 관할 소속기관은 기업체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 (실습생 실제 훈련일수 및 총 훈련일수 기재)

- 계산식

$$\text{총 한도액(40 ~ 80만원)} \times \frac{\text{해당일까지 현장실습생의 실제 훈련일수}}{\text{총훈련일수}}$$

04.특성화고 현장훈련 사업 운영 안내

현장실습 사례별 수당 신청 가능 여부(사례별 정리, 4주 기준)

구분 (운영계획서상)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실습생 훈련 운영기간	모니터링 가능 여부	수당지급 가능 여부
9월이전	7.23~8.17	7.23~8.17	X	X
9월이전	7.23~8.17	9.17~10.23	O	O
12월 이후	11.21~12.17	11.21~12.17	X	X
12월 이후	11.21~12.17	11.1~11.31	O	O
실습기간 미달	10.17~23	10.17~23	X	X
시작, 종료일 미기입	없음	11.1 ~ 11.31	O	O

05. 특성화고 현장훈련 권역별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정리

Q.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또는, 기업과 특성화고 학생과 현장실습표준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한 선도기업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개발한 과정 모델을 참고하여 현장실습 기간에 맞춰 실습계획을 세우고, 기업과 특성화고 학생과 현장실습표준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 과정모델은 **훈련포털(HRD—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hrd.go.kr - [일학습병행] - [표준모델] 에서 다운로드 가능

05. 특성화고 현장훈련 권역별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정리

Q.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특성화고 전체를 대상으로 쉽게 현장실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NCS 능력단위 기준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특성화고 현장훈련 지원사업 대상 기업에게는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기업에 **기업현장교사 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월 40만원 기준으로 최대 8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기업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훈련을 위해 훈련기간 중 산업안전 외부전문가의 **모니터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05. 특성화고 현장훈련 권역별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정리

Q.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현장실습 운영기간 및 실습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차 모집) 학생이 기업에서 9.17 ~ 11.30 사이에 현장실습을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신청인 경우) 9.1 ~ 11.30 사이 현장실습을 하여야 합니다.

4 주 ~ 8주(1개월 과정은 4주, 2개월 과정은 8주 기준) 지원 가능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 1주 35시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 실습은 불가합니다.
4주 미만, 또는 8주 초과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05. 특성화고 현장훈련 권역별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정리

Q. 1개 기업에서 여러분야로 신청이 가능한 지 또는 1개 기업에 '가' 학교, '나'학교 등 여러학교가 동시 참여시 이중으로 지원되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선정된 다수 과정 중 가장 긴 한 개 과정에 대하여 지급해드립니다.

1개 기업에 '가'학교 '나'학교가 다른 실습과정으로 동시 참여하더라도 선정된 과정 중 가장 긴 한 개 과정에 한해 기업현장교사 수당을 지원합니다.

05. 특성화고 현장훈련 권역별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정리

Q. 현장실습 운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맞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실습 기간 중에는 산업안전보건(4h), 성희롱예방교육(1h), 기업조직이해(1h) 시간을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이내, 1주 35시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 실습은 불가합니다.

05. 특성화고 현장훈련 권역별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정리

Q. 기업현장교사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나요?

기업에서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직원이면 가능합니다.

운영계획서에 맞춰 실습생들을 지도하고, 『**주단위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단위 훈련일지**』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특성화고 현장훈련 권역별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정리

Q. 수당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업에서 실습종료 후 기업훈련장소 소재지 기준 공단 지부·지사에 수당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기업현장교사 수당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수당신청서, 기업현장교사 훈련일지, 재직(경력)증명서, 입금기업통장사본 등
- 관련서류 및 관할구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신청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실습장소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18.12.14.(금)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05. 특성화고 현장훈련 권역별 설명회 주요 질의답변 정리

Q.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귀책사유로 실습생이 중단 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기업 귀책사유 : 기업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및 현장실습 시간외 근무, 휴일・야간 실습 등 기업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훈련이 중단된 경우,

실습생이 원하여 중단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기업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과정 실습생이 모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기업에서는 공단 지부・지사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실습생 실제 훈련일수 및 총 훈련일수 기재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Q&A

Thank you

